

디지털금융 관련, 2023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및 검사계획

금융감독원은 2023. 2. 6. '2023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2. 15. '2023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업무계획과 검사계획에 포함된 디지털금융 관련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I. 디지털 금융관련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1. 금융산업의 건전한 디지털 혁신 기반 조성

(1) 디지털 금융의 건전한 성장 육성

(금융데이터산업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 금융·비금융 간 데이터 결합·활용 촉진 등을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지정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범위 등 확대 방안(겸영부수업무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수익원 다변화)을 검토하고, 금융분야 AI 관련 리스크(데이터 편향으로 인한 특정 고객집단 차별, 설명가능성 부족 등)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현황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건전한 디지털자산 시장 기반 조성) 단계별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에 대비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거래소 자율감시를 지원하고, 시장모니터링 역량 강화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디지털자산 리스크 협의회(22.6월 kick-off)를 통해 내부통제, 투자자보호 관련 리스크를 진단하고 정책 컨설팅을 제공하며, 가상자산 관련 충실한 회계정보 공시를 위해 가상자산 주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합니다.

(IT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검사·점검 강화) 금융IT 부문의 업무지속성 확보를 위한 비상대응 계획(장애대응 절차·매뉴얼, 시스템 이중화 여부, 예비장비 확보 및 백업장비 운영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모바일앱 및 웹앱(하나의 플랫폼(앱)을 통한 금융권의 다양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 통합 제공) 관련 이용자 인증체계, 단말기 보안통제, 소비자 선택권 제한 및 거버넌스 체계 등을 중점 검사할 계획입니다.

(전자금융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규제 및 시스템 정비)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가입한도를 합리적으로 상향하고 일정규모 이상 중소 금융사에 대해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화를 검토하며, 최근의 IT사고 사례 등을 반영하여 중대한 사고 발생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소비자보호 체계 정비

(대출비교플랫폼 영업확대 등에 대비한 판매 및 광고규제 정비) 온라인 대출모집인 등록 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을 면밀히 심사하고 등록 이후 알고리즘 유지·운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광고,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 디지털 新유형 광고 활성화에 따른 금융상품 광고 규제체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상품 개발·판매단계 통합적 모니터링 실시) 혁신적인 신상품 출시 후 발생하는 소비자보호 이슈(약관과 실제 서비스가 부합하지 않거나 소비자 안내가 미흡한 경우 등)를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약관 수정 권고 및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플랫폼을 통한 예금·보험상품 맞춤형 비교·추천 서비스를 도입하는 경우에 소비자 권익보호 사항(플랫폼과 금융회사간 책임소재 등)이 충분히 반영되는 약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2.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장기 성장동력 확충

(금융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감독제도 마련) (공통) 업권별·법령별 금융회사 업무범위, 사전·사후보고제도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규제차익을 제거하는 등 합리적 정비를 추진하고, (은행) 금융·비금융 융합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개선,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범위 확대에 따른 기존 감독제도와와의 정합성을 검토·개선하며, (보험) 보험회사의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 금융회사 책임 경영 관행 기반 조성

(금융지주 고객정보 활용) 금융지주의 빅데이터 등 고객정보 제공·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금융지주그룹 내 고객정보 관리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합니다.

(조각투자 공시 서식 보완 및 토큰 증권 규정 등 정비)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공모 발행시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 보완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토큰 증권이 관련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규정·서식 등을 개정하고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II. 디지털 금융관련 금융감독원 검사계획

금융감독원은 '23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그간 검사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과거 검사관행을 지양하기 위해 업무 개선을 유도하는 검사,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는 검사, 중요 리스크에 집중하는 검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디지털금융 관련 중점 검사사항은, ① 비대면 거래, 종합플랫폼(One App) 확대 등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인증체계, 보안통제 등 전자금융 안전성(예컨대, 금융권의 다양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에 따라 장애 발생 시 연계 금융서비스가 일괄 중단되어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 ② 인터넷전문은행의 펀드 판매 등 신규 취급업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등입니다.

화우 디지털금융팀은 금융회사, 플랫폼, 핀테크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이주용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46

E. jylee@yoonyang.com

정현석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047

E. hsjung@yoonyang.com

이보현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069

E. bhlee@yoonyang.com

최용호

파트너변호사

T. (+82) 2 6182 8396

E. yhchoi@yoonyang.com

주민석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21

E. msjoo@yoonyang.com

김은진

변호사

T. (+82) 2 6182 8354

E. ejink@yoonyang.com